



## 「보험업법」 시행령 일부 개정

최원 선임연구원

■ 금융위가 2012년 1월 3일 「보험업법」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한 가운데, 그 주요 내용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 허용,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예외 인정, 농협 관련 조항이 포함됨.

-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을 허용하여 보험설계사의 1회 방문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청약서의 인터넷 수시 확인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증진함(제42조의2 ②).
  -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설명서, 청약서에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에서 전자서명에 의한 확인을 허용하지 않아 종이문서 낭비, 소비자 불편 등을 초래하였음.
- 국내 보험회사가 중국, 영국 등의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거래회사, 중개사 등이 본사에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회사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보증을 허용함(제57조의2).
  - 단, 총자산 3% 이내에서 운용하고, 채무보증 대상은 보험금 지급 채무로 한정하며, 지급여력비율이 200% 이상인 보험회사에만 허용함.
- 2011년 1월 13일에 농협공제사업을 보험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보험업 법령을 정비함.
  -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·농협은행을 추가함(제40조 ①).
  - 농협이 2009년 10월 28일 기준 판매 공제상품 수준의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(제40조 ②)하고, 농·어업인 정책보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영업규제 적용을 배제함(제40조 ⑫).
  - 공제계리업무 종사자 경력을 보험관계업무 종사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함(부칙 제3조 ①).

(「보험업법」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주요 내용, 금융위, 1/3)